



2018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하 동 군

2018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 ◆ 우리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0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49억원)보다 1,22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9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1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70억원입니다.
- ◆ 우리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개편전)는 17.3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개편전)는 65.82%입니다.
- ◆ 우리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8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동종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의존재원 확보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소미정(880-2023)

홈페이지 재정공시 주소 : http://www.hadong.go.kr/sub/08_06_02.asp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하동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5,070	4,279	791	3,849	3,441	408
	세 출 예 산	5,070	4,279	791	3,849	3,441	408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38	14.96	2.42	15.58	15.51	0.0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5.82	62.00	3.82	66.45	64.68	1.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58	32	26	12	24	△12
재정운영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표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주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하동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6,983	415,594	0	75,035	16,35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2,438	362,228	397,256	427,877	506,98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8,932	100%	320,671	100%	346,122	100%	385,119	100%	415,594	100%
지방세	13,980	4.53%	14,975	4.67%	16,849	4.87%	18,670	4.85%	19,670	4.73%
세외수입	9,602	3.11%	8,237	2.57%	10,390	3.00%	11,134	2.89%	12,133	2.92%
지방교부세	144,991	46.93%	150,690	46.99%	150,620	43.52%	161,840	42.02%	182,000	43.79%
조정교부금 등	11,000	3.56%	12,000	3.74%	16,500	4.77%	19,300	5.01%	19,300	4.64%
보조금	110,358	35.72%	115,665	36.07%	129,142	37.31%	146,349	38.00%	142,065	34.18%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00	6.15%	19,104	5.96%	22,621	6.54%	27,826	7.23%	40,426	9.7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6,983	415,594	0	75,035	16,35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2,438	362,228	397,256	427,877	506,98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8,932	100%	320,671	100%	346,122	100%	385,119	100%	415,594	100%
일 반 공 공 행 정	17,256	5.59%	17,914	5.59%	17,921	5.18%	18,392	4.78%	18,801	4.52%
공공질서 및 안전	5,103	1.65%	6,411	2.00%	9,164	2.65%	13,936	3.62%	12,200	2.94%
교 육	3,190	1.03%	3,888	1.21%	4,391	1.27%	4,141	1.08%	3,804	0.92%
문 화 및 관 광	24,317	7.87%	26,208	8.17%	28,722	8.30%	31,018	8.05%	24,112	5.80%
환 경 보 호	13,797	4.47%	13,910	4.34%	19,787	5.72%	32,369	8.40%	29,265	7.04%
사 회 복 지	60,584	19.61%	69,268	21.60%	70,027	20.23%	74,429	19.33%	78,451	18.88%
보 건	6,315	2.04%	7,356	2.29%	7,027	2.03%	7,021	1.82%	11,012	2.65%
농 립 해 양 수 산	67,252	21.77%	68,537	21.37%	71,762	20.73%	88,415	22.96%	91,731	22.07%
산 업 · 중 소 기 업	36,955	11.96%	15,336	4.78%	16,424	4.75%	15,204	3.95%	49,823	11.99%
수 송 및 교 통	12,278	3.97%	10,000	3.12%	13,942	4.03%	11,170	2.90%	15,776	3.8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4,389	4.66%	27,457	8.56%	26,370	7.62%	31,523	8.19%	26,009	6.26%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321	0.08%
예 비 비	3,100	1.00%	6,030	1.88%	11,100	3.21%	6,629	1.72%	2,938	0.71%
기 타	44,397	14.37%	48,355	15.08%	49,487	14.30%	50,872	13.21%	51,350	12.3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30,835	510,403	79,568	18.47
하동군	427,877	506,983	79,106	18.49
출자·출연기관	2,958	3,420	462	15.6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녹차연구소, (재)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개편전 기준)는 17.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38 (7.65)	415,594 (415,594)	72,229 (31,803)	343,365 (343,365)	0	0 (4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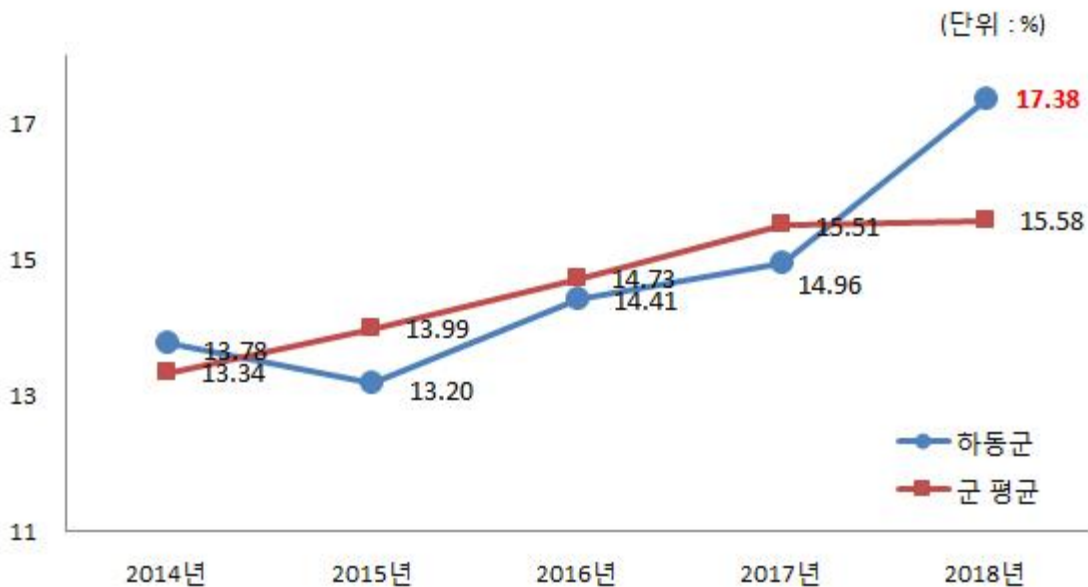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3.78 (7.63)	13.20 (7.24)	14.41 (7.87)	14.96 (7.74)	17.38 (7.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하여 올해 17.38%로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1.8% 높아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개편전 기준)는 65.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2 (56.09)	415,594 (415,594)	273,529 (233,103)	142,065 (142,065)	0	0 (4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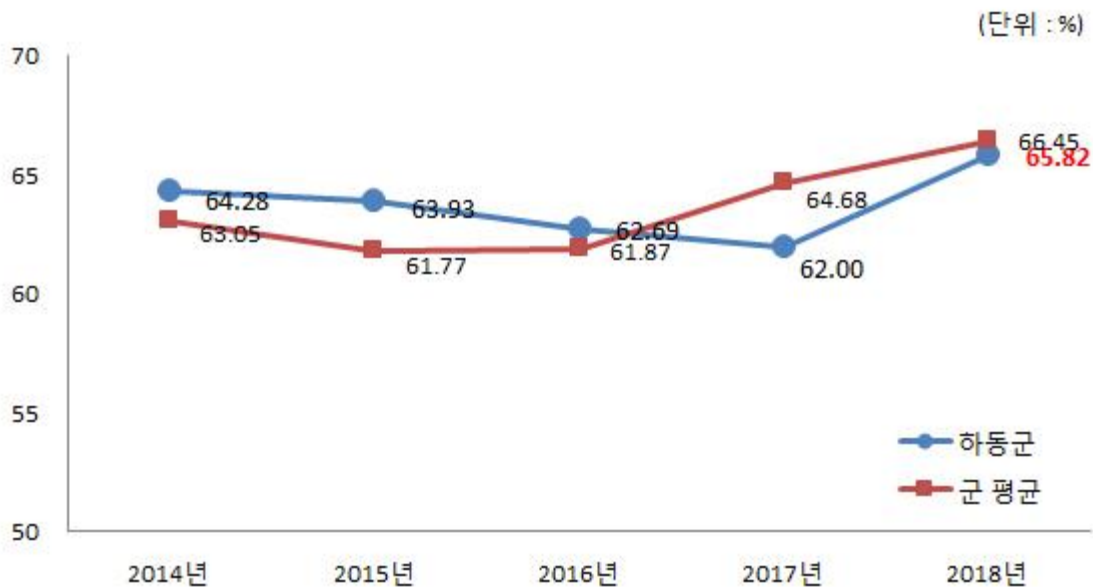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제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28 (58.13)	63.93 (57.97)	62.69 (56.15)	62.00 (54.77)	65.82 (56.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재정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등으로 지난해 보다 3.82% 증가하였고,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0.63% 낮은 상황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0,172	422,504	187	2,717	2,530	40,690	425,034	-34,862	5,828
일반회계	375,320	358,668	0	0	0	21,700	358,668	16,652	38,352
기타 특별회계	14,233	61,654	187	2,717	2,530	8,809	64,184	-49,951	-41,14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619	2,182	0	0	0	10,181	2,182	-1,563	8,618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7,047	-15,892	-19,492	-25,049	-34,862
통합재정수지 2	1,884	2,965	2,946	3,242	5,829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349억원 적자로, 특별회계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407억원 포함하여 58억원 흑자를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6,621	549,454	559,872	570,029	580,380	2,786,356	2.50%
자 체 수 입	41,495	44,798	45,103	45,412	45,724	222,532	2.50%
이 전 수 입	398,921	405,807	414,767	423,948	433,307	2,076,750	2.1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205	98,849	100,002	100,668	101,348	487,072	4.10%
세 출	526,621	549,454	559,872	570,029	580,380	2,786,356	2.50%
경 상 지 출	100,352	112,083	112,491	113,578	114,612	553,116	3.40%
사 업 수 요	426,269	437,370	447,381	456,451	465,768	2,233,239	2.2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5	23,376
여성정책추진사업	30	3,8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14,5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5,048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모델 1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06,983	6,014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014	
안전총괄과	하천유지관리	900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2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2,060	
건설교통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84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사업	450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100	

▶ 상기 사업명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포괄적 사업명임.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107	230	236	485,421	409,139	76,283
기획조정실	1	6	9	10	6,091	10,010	-3,919
문화관광실	1	6	13	10	18,336	23,077	-4,741
미래전략과	1	6	11	11	12,256	14,557	-2,300
경제수산과	1	6	17	16	14,836	11,233	3,603
주민행복과	1	12	15	24	64,879	61,430	3,449
행 정 과	1	8	18	17	69,786	67,867	1,919
안전총괄과	1	3	9	7	19,087	31,386	-12,300
민 원 과	1	3	7	5	2,916	2,479	437
재정관리과	1	3	5	6	6,316	6,108	208
산림녹지과	1	3	14	12	16,479	17,800	-1,321
건설교통과	1	6	6	6	41,091	33,840	7,251
환경보호과	1	7	15	13	14,167	17,397	-3,230
도시건축과	1	5	14	6	11,938	9,392	2,546
산단조성과	1	6	8	6	90,036	6,267	83,770
보 건 소	1	6	16	19	9,867	6,636	3,231
농업기술센터	1	15	42	56	46,982	46,015	967
체육시설사업소	1	3	7	5	5,592	7,766	-2,173
상하수도사업소	1	2	2	5	33,782	34,916	-1,134
의회사무과	1	1	2	2	984	963	2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38	65.82	18.88	24.4	49.6	122.7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1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4,426	203,700	△40,72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동경비	199,360	94,2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270	
	의원국외여비		32,890	
지방보조금		22,732,274	15,424,658	△7,307,61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64,070	1,264,07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30,000	830,000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http://lofin.mois.go.kr>)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함.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736	2,771
인건비 절감	273	302
지방의회경비 절감	4	7
업무추진비 절감	75	4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497	54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286	926
지방청사 관리·운영	695	94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79	-87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83	-616
지방세 체납액 축소	-878	405
경상세외수입 확충	367	-31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3	-353
탄력세율 적용	-85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5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하동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17
법령을 위반한 지출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73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처리 및 특별회계 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	44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하동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